

# 『음악논단』 연구윤리 규정

개정일: 2017년 5월 16일

## 제1장 목적

본 규정은 학술지 『음악논단』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 및 심사자, 편집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## 제2장 연구자 의무

**제1조**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.

**제2조**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할 수 없다.

**제3조**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.

## 제3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

### 제1조 표절

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에서 전부, 혹은 일부를 출처의 명시 없이 그대로, 혹은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. 따라서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, 참조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. 이는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.

### 제2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

연구자는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에 있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업적물을 이중출판, 이중투고하지 않는다.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단,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명확히 인용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

- 1)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,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 개인적 접촉을 통해 입수한 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한다.
- 2)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, 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차용,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. 또한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느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, 어느 부분이 연구자의 독창적인 생각, 주장,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### 제4조 논문 수정

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야 한다. 만약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편집위원(회)에 대한 윤리 규정

**제1조** 편집위원(회)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
**제2조** 편집위원(회)은 연구자의 성별, 나이, 소속기관뿐 아니라, 그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오직 논문의 학술적 질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을 취급하여야 한다.

**제3조** 편집위원(회)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.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편집위원회가 최종결정할 수 있다.

**제4조**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.

## 제5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

**제1조** 심사위원은 편집위원(회)으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단, 논문의 내용에

평가하기에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편집위원(회)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
**제2조**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공정하게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. 논문을 탈락시킬 때에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.

**제3조**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편집위원(회) 이외의 타인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. 논문에 대해 타 연구자와 논의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. 또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연구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.

**제4조**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,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.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,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.

##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

**제1조** 연구윤리 위반이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임무를 맡아 위반 혐의에 대해 제보자, 저자, 참고인, 증거자료 등을 통해 폭넓고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.

**제2조**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.

**제3조**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.

**제4조** 편집위원(회)은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에 대한 신원 및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.

**제5조**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, 다음과 같은 징계를 취한다.

1)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.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,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자에게 공지한다.

2)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연구자는 이후 3년간 『음악논단』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.

### 제7장 심사윤리 위반에 대한 지침

**제1조** 심사위원이 제4장 제2조나 제3조를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회(윤리위원회)는 그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해야 한다.

**제2조** 심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.

**제3조** 제1조의 위반여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.

**제4조** 심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이후 3년간 『음악논단』의 논문 심사를 할 수 없다.

### 제8장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### 부 칙

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